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784호, 2024. 7. 30.,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부패방지정책) 044-200-7615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부패행위신고) 044-200-7694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044-200-7690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신고자 보호·보상) 044-200-7753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고충민원 조사·처리) 044-200-7308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044-200-7318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1.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 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 구
 -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 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개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 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평가)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 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에 따라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 등을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5.]
-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 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5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1. 30.>
 - ②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안내 및 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기술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경유한 소관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접수 및 안내 등 일부 사무를 「정부조직법」제6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 관리
 -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 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 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 홍보
 - 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안 등의 신청·접수·분류·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공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 는 단체
- 제15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신설 2015. 10. 20.>
 - 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 10. 20.>
 - ⑥ 위원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0. 20.>
-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 10. 17., 2016. 9. 27., 2020. 12. 22., 2022. 7. 19.>
 - 1. 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3.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 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 5.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 6.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 7.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8.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8의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8의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 30.>
- **제17조(소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5. 28., 2014. 11. 19., 2017. 7. 26.>
 - 1. 행정・교육・문화・복지・노동・교통 및 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세무・농림・수산・환경 및 재정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 3. 주택 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 4. 국방・병무・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 5.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 ②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제척 · 기피 · 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18. 1. 30.>
-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 한 사안
 -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18. 1. 30.>
-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국방·안보 또는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1조(사무처 직원의 선발)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및 행정심판업무의 수행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청렴성·도덕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 제22조(위원회 행동강령 등) ① 위원회는 위원,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행정심판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3조(자문기구) ①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복지, 산업, 건축, 도시, 도로, 군사, 경찰, 노동, 환경, 민
 - 형사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 제24조에 따라 자문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 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25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5.>
 -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
 - 2.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 3. 법 제25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
 - 4. 법 제29조제1항제2호,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참고인・감정인 또는 관계 공직자 4의2.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 5. 제24조에 따른 전문상담위원
 - 6. 제31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 7. 삭제 < 2019. 10. 15.>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에 준하는 자(공무원은 제외한다)로서 위원회에 출석한 자
-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2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 1.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2.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 3. 소관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 4. 업무처리에 있어서 책임감과 능력이 있고 친절・성실한 자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견직원이 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 제27조(파견직원의 인사 등) 위원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직급・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업무 및 직위를 부여하여 야 한다.
- 제28조(운영상황)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4. 그 밖에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9조(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도개선에 관한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조사·평가의 공개)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7.]

-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1. 부패유발의 가능성
 -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 타당성 여부
 - 3. 행정절차의 투명성
 -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수 있다.<개정 2019, 10, 15,>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
 -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른 규제 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 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 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 제35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5. 11. 20., 2016. 11. 29., 2020. 6. 30.>
 - 1.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 2.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3. 다른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권익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 5.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6.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의 소속・계급 및 군번
- **제36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권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7조(대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법 제3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권익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 ② 권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8조(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관계 행정기관등을 잘못 지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등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39조(신청서의 보완)**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제40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제41조(행정심판 등의 통보)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에 따라 접수된 민원사안이 법 제41조에 따라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권익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처리된 사안인 경우에는 그 사안을 처리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권익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이 접수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및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 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는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제44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 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 으로 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45조(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 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속한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출장 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제46조(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 밀사항이나 마약과 관련된 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 1.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 2.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 3.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 제4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① 법 제44조에 따른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 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조정회의는 권익위원회 위원장 또는 권익위원회 위원이 주재한다.
 - ④ 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고충민원의 내용
 - 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47조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 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 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계 행정기관등·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0. 12. 22.>
- 제5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과 처리담당자의 소속·성명·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1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있는 경우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1. 관계 서류의 제출
 -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 진술
 -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②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 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 교류를 위한 활동
 -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지원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7., 2019. 10. 15.>
 - 1.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의 여부
 -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제56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항은 첨부하지 않는다.<개정 2022. 7. 19.>
 - 1.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신고자 인적사항
 - 2.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하여 보관하는 자료
 -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2. 2. 18., 2022. 7. 19.>
 -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2, 2, 18.>
-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5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5.>
 - 1.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 2.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9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 2. 18., 2022. 7. 19.> [본조신설 2019. 10. 15.]
-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각 호의 자료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 7. 19.>
 - ②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7. 19.>
 - ③ 삭제 < 2022. 7. 19.>

[제목개정 2019. 10. 15.]

-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0. 15.]

-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7. 19.>
 -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 2.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 3.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 우 그 사실
 -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 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②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22. 2. 18., 2022. 7. 19.>
-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9.>
 - 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 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3조(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9.>
 - ② 신고자는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9.>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한다.<신설 2019. 10. 15.>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수 없다.<신설 2019. 10. 15., 2022. 7. 19.>
- **제64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른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 **제65조(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15.]

- 제66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서 · 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 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0. 15.]

- 제67조(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 정"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 ②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3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속기관장등(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5.>
 -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라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분보장신청인(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5.>
 -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5.>
 -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한다.<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19. 10. 15.]

-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근로기준법」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등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거나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권고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개정 2019. 10. 15.>
 - ②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
 - ③ 법 제62조의3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전출·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9. 10.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15.>

- 제68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신청하려는 신분보장신청인은 그 인적사항·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등에 대한 불이 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5.>
 - ③ 위원장은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 사실을 신분보장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
 - ④ 위원장이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해당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경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로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

[본조신설 2016. 9. 27.]

[제목개정 2019. 10. 15.]

제6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9. 10. 15.]

- 제70조(신변보호) ① 법 제6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0.>
 - ② 법 제6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30,, 2020, 12, 31,>
 - 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 ④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
 -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70조의2(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66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 자료 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 2. 출석 및 의견 진술
 - 3. 소속 직원의 파견, 공동조사 및 자문
 - 4. 신고자(법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및 법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자·증언자·고소인·고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 5. 법률 상담ㆍ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 6. 신고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 7. 그 밖에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조신설 2019. 10. 15.]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5., 2020. 12. 29.>
 -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2. 법령의 제정 ㆍ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4. 삭제 < 2019. 10. 15.>
 -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개정 2009. 5. 28., 2015. 10. 20., 2019. 10. 15., 2022. 7. 19.>
 - ③ 삭제 < 2019. 10. 15.>
 - ④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제1항 단서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1항 단서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80조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제79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할 때"로 본다. <개정 2023. 12. 19.>
 -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19. 10. 15 >
 -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5.>
 -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5.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 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③ 삭제<2019. 10. 15.>
-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 제74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① 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법 제68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 7. 19.>
 -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 3.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노무사 등의 수임료
-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 5.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신고 및 법 제65조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금 액
-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6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 ④ 신고자 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6. 13.>

[전문개정 2019. 10. 15.]

- 제74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위원회는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원인제공자의 인적사항
 - 2. 사용 목적
 - 3. 제공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자료의 목록

[본조신설 2024. 7. 30.]

[종전 제74조의2는 제74조의3으로 이동 <2024.7.30>]

- **제7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9. 27.]

[제74조의2에서 이동 <2024. 7. 30.>]

- 제75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 10. 15.>
 -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구조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5.>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7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 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9.>
 -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4. 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0. 20., 2023. 12. 19.>
 - ③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22. 2. 18., 2023. 12. 19.>

[제목개정 2023. 12. 19.]

-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 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13.>
-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 보상금 ·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 후 보상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 · 의결한다. <개정 2019. 10. 15., 2022. 7. 19.>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9.>
 - 1.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아직 없는 경우
 - 2.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결정된 지급금 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나머지 보상금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우선 지급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초과하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에 이를 때까지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9.>
 -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신설 2019. 10. 15., 2023. 12. 19.>
 -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개정 2023. 6. 13., 2023. 12. 19.>
 - ⑥ 위원회는 법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신설 2022. 7. 19., 2023. 6. 13., 2023. 12. 19.>
- 제80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여 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 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개정 2023. 12. 19.>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23. 12. 19.>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목개정 2023. 12. 19.]

-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 12, 19.>
 - ③ 삭제<2023. 12. 19.>

[제목개정 2023, 12, 19.]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3. 12. 19.]

제83조 삭제 <2019. 10. 15.>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84조(감사청구인)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란 300명을 말한다.

- **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 가 진행 중인 사항
 -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 제86조(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72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6.>
- **제87조(감사청구서의 반려)**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 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 2.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 3.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의견
 - 5. 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목개정 2020. 12. 22.]

-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점검일 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야 한다.<신설 2022. 7. 19.>
 - ⑦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7. 19.>

[본조신설 2016. 9. 27.]

- **제88조의3(포상)** ①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1.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확산 및 국가청렴도 향상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2. 고충민원 처리업무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3. 국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 민원분석 업무 추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4. 행정심판 운영 및 제도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5.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②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5.]

-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이하 "취업제한기산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7., 2022. 7. 19.>
 - 1. 영리사기업체 및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 2.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 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 4호에 따른 법인·단체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7.>

-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①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란 비위 면직자등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1.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2.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② 삭제<2022. 7. 19.>

[본조신설 2016. 9. 27.]

-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 제한기산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7., 2022. 7. 19.>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8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등이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비위면직자등이 소속하였던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 9. 27.>
 - ④ 법 제82조의2 전단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신설 2016. 9. 27., 2018. 9. 18., 2020. 6. 9., 2022. 2. 18.>
 -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 2. 비위면직자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기관 및 징계종류·징계사유·퇴직일
 - 3.「공무원연금법」제65조제1항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기관・제한사유
 - 4. 「군인연금법」제38조제1항 및「군인 재해보상법」제42조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기관·제한사유
 - 5.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취득·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 6.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항 제19호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
 -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 및 군수형자의 수형기관, 입소일자, 출소일자 및 출소사유에 관한 자료

[제목개정 2016. 9. 27.]

-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30., 2022. 2. 18., 2022. 7. 19.>
 - 1.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평가에 관한 사무
 - 2. 법 제12조제13호에 따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 3.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무
 - 4.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무
 - 5.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 6.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접수・처리・조사에 관한 사무
- 7. 법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 8. 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9. 법 제64조 및 제64조의2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 법 제68조에 따른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
- 10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 11. 법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 12. 법 제9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 10. 17.]

제9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10. 15.> [전문개정 2009. 5. 28.]

제92조(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4784호,2024. 7. 30.>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1. 일반기준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귀책 정도,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금액	
가. 법 제62조의3제1항제1호(법 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		
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2) 법 제2조제7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3) 법 제2조제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0만원 이상	
불이익조치	2,000만원 이하	
나.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법 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200만원 이상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	2,000만원 이하	
(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신		
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62조의3제1항제3호(법 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200만원 이상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	2,000만원 이하	
지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62조의3제1항제4호(법 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200만원 이상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전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	2,000만원 이하	
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2. 19.>

보상금의 산정기준(제77조제1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산 정 기 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비고: "보상대상가액"이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수상한 실적이 있는 등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에	법 제91조제3항제1	200	300	500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	<u>ই</u>			
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나. 법 제62조의2제4항(법 제65조	법 제91조제1항	1,000	2,000	3,000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				
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2조의2	2법 제91조제3항제2	200	300	500
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 <u>호</u>			
한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3조제	법 제91조제2항		1,000	
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				
부한 경우				